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5. 2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5월 24일 14:00 ~ 15:05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1차 임시 및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3년도 제1차 임시 및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25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걱정한 조치라고 생각이 됨. 단, 이것이 경기대응완충
자본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발표할 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문장을 잘 다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7호 『한국산업은행의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제한 예외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우조선해양 투자유치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은의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 초과취득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 『(주)매일방송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제129호 『(주)OOOOOOOO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위원) 과징금이 증선위 수정심의안으로 확정된다면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음.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란 “재량행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재량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것임. 행정청이 과징금의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것은 분명함.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함. 그간 新외감법 시행 이후 수십 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정성지표를 통한 정상참작은 부가적으로 적용해왔음.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시면 정량지표는 해당되는 것이 없고 모두 정상참작 사유임.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른 증선위 사례 중에 많이 감액한 전례를 감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함. (주)매일방송 등의 외부감사법 위반의 피해자가 많지 않다는

감경사유도 받아들기 어려움. 왜냐하면 다른 기존 위반자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임. 자진수정에 따른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외부감사규정상 자진수정에 따른 감경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음. 또한 비상장사라는 감경 사유도 원안 과징금 산정시 이미 반영된 만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크지 않음. 2022년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느냐는 쟁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원 합치의견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감경을 많이 해줄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선례가 되어 향후 법집행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로 지나치게 활용될 것이 우려됨.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람. 따라서 저는 과징금 감경의 수준을 20%에서 50%로 심의한 감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할 것을 제안함.

- (참여자) 동 안건과 관련하여 증선위 심의 시에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음. 먼저 중복제재소지 부분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칙적으로는 매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에 제재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회계처리가 누적적·지속적으로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번 2017년, 2018년 위반은 2011년 위반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소극적 위반임에도 2011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 7,000만원의 약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위반행위의 동기를 감안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두 번째,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자진 수정공시한 점을 고려하였음.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금감원 역시 감리에 착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게만 이를 미리 수정할 것을 기대·요구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음. 세 번째, 2018년 11월 외감법상 과징금을 도입하게 된 취지가 과거 회계부정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도입 이후 회계부정을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넷째, 회계정보 이용자가 적은 비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였음. 마지막으로, 저희와 유사한 타 행정기관의 경우 규정상 최대 75%까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으며, 규정상 최대 97.5%까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기관도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의 경우에도 감경을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판례에서 확인하였음.

- (위원)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논의 과정에서 개보위나 공정위 사례를 보면, 행정청의 재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법원의 판결도 행정청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과 해외 사례에서도 과징금 결정에 있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 확인했음. 따라서, 과거의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감경 사례가

증선위와 금융위의 결정을 구속하는 선례로는 작용하기 어려우며, 증선위의 심의 결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위원) 본 건은 이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행정상의 제재를 2019년에 받았던 사안임. 그런데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재무제표 때문에 2019년에 받았던 제재보다 훨씬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나 안정성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였음. 그래서 저는 증선위 심의 의견에 동의를 했음.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와 증선위 과정에서, 그리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증선위와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음. 오늘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128호부터 제129호까지 2개 안건은 각각 증선위가 수정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소수의견 부기 조건

- 의결안건 제130호 『(주)OOOOOOOO의 前대표이사 OOO 등 2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 조치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D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대상을
조정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 『(주)리치엔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리치엔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건에 대해 과태료 9,7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주)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소속설계사가 아닌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 3건에 대해 과태료 2억 2,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보험 GA들이 커지면서 모집행위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 GA들의 영업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는 등 금감원 입장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위원) 방카슈랑스, GA, 온라인 채널 등 모집 시장이 좀 더 다양해지고 건전화되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제도개선 등을 고민중인데 일단 현장에서 모집 관행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한쪽을 점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고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4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근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5분 폐회)